

# 평창군의회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1
----------	-----

발의년월일 : 2002. 4. 23 .

발 의 자 : 강석주의원외3인

## 1. 제 안 이 유

- 2002. 1. 4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17484호)되어 국내여비 중 숙박비의 지급단가가 일부 인상됨에 따라,
- 평창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 지급기준도 공무원여비 규정과 같이 현실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2. 주 요 골 자

- 의장·부의장의 숙박료(1야당) 지급기준 “41,000원”을 “46,000원”으로 하여 5,000원을 인상함. (안 별표1)
- 의원의 숙박료(1야당) 지급기준 “22,000원”을 “25,000원”으로 하여 3,000원을 인상함. (안 별표1)

## 3. 참 고 사 항

- 관계법령 발췌 : 별 첨 참 조

## 평창군의회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의회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국내여비지급기준표중 의장·부의장 숙박료(1야당)란의 “41,000”을 “46,000”으로 하고, 의원 숙박료 (1야당)란의 “22,000”을 “25,000”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구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b>【별표1】</b> 국내여비지급기준표</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 style="width: 20%;">구 분</th> <th style="width: 80%;">숙박료(1야당)</th> </tr> </thead> <tbody> <tr> <td>의 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41,000</td> </tr> <tr> <td>부의장</td> <td></td> </tr> <tr> <td>의 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2,000</td> </tr> </tbody> </table>	구 분	숙박료(1야당)	의 장	41,000	부의장		의 원	22,000	<p><b>【별표1】</b> 국내여비지급기준표</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 style="width: 20%;">구 분</th> <th style="width: 80%;">숙박료(1야당)</th> </tr> </thead> <tbody> <tr> <td>의 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46,000</td> </tr> <tr> <td>부의장</td> <td></td> </tr> <tr> <td>의 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5,000</td> </tr> </tbody> </table>	구 분	숙박료(1야당)	의 장	46,000	부의장		의 원	25,000
구 분	숙박료(1야당)																
의 장	41,000																
부의장																	
의 원	22,000																
구 분	숙박료(1야당)																
의 장	46,000																
부의장																	
의 원	25,000																

# 관 계 법 령 발 취

## □ 지방자치법

○ 제32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지방의회 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다만, 의정자료의 수집·연구를 위한 보조활동의 비용은 시·도의회 의원에 한한다.
  2.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회기중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회기수당
- ②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지방자치법시행령

○ 제15조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①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5, 회기수당(원격지 회의출석비를 포함한다)의 지급기준은 별표6,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7 및 별표8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

②~③ 생략

[별표 7]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 (제15조 관련)

- 국내여비 지급 범위표 : 생략
- 비고 1~2 : 생략

3.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 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공무원여비규정

- 제16조 (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① 국내 여행자의 일비·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2, 국외여행자의 경우는 별표4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이를 지급한다.  
(이하생략)

※ [별표 2] 국내여비 정액표 중 숙박비 (1야당) 인상

(단위 : 원)

구분	특호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종전	실비	41,000	41,000	22,000	20,000
개정	실비	46,000	46,000	25,000	22,000

□ 평창군의회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조례

- 제4조 (여비) ①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여비의 지급기준은 국내여비의 경우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 기준표에 의하고 국외여비는 [별표2]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이하생략)

※ [별표 1]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 중 숙박료 (1야당)

의장·부의장 : 41,000원, 의원 : 25,000원